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27.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 략기 획 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전 화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인 약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 코로LHIOI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계기 집회 대응방안. ▲코로나19 자살 예방을 위한 1393 강화대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계기 집회 대응방안, ▲코로나 19 자살 예방을 위한 1393 강화대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자체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까지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방역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언급하였다.











평생친구

- 또한, 지난 달 개정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하면서, 중수본에게 현장 시행지침 마련 등 차질없는 후속조치 준비와 함께 국민들과 일선 업소·시설에게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부터 2차 긴급재난지워금 지급이 시작 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지급대상자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아내를 드리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스미싱 범죄가 발생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까지 당하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 경찰청에게 스미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에게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해외 입국자와 국내 발생 자가 격리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우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 협조에 대한 감사와 함께 결 리장소를 이탈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 이와 함께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자치구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24시간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탈자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이탈 의심자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점검하고, 무단이탈 또는 격리 거부자 발생 시 경찰 고발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추석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9월 25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 낚시객 이동이 잦은 항·포구와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증상 점검 등 낚시어선의 거리 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신규로 충원한 **감염병 관리 전담인력 144명을 10월 5일** (월)부터 담당부서, 군구 보건소 현장에 배치하여 감염병 관리 전담인력의 부족과 피로도 증가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대책을 9월 28일(월) 부터 10월 11일(일)까지 실시하여, 도(道) 및 시·군 방역대책반 운영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또한 대중교통, 성묘·봉안시설의 방역을 강화하여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방역택시를 운영하고, 실내 봉안시설은 1일 총 방문자 수 준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온라인 추모· 성묘서비스 | 제공 등을 통해 대민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해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충전식 분무기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유흥시설, 방문판매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 한편, 개천절 및 한글날 등 서울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시군 및 버스조합 등을 통해 불법 집회와 관련한 운송계약을 자제해 줄 것을 업체에 권고(9.21.)하였으며, 전세버스 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평생 친구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 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9월 13일(일)부터 9월 26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71.6명**으로 이전 **2주간**(8.30.∼ 9.12.)의 130.5명에 비해 58.9명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9.9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30.~9.12.)**의 46명**에 비해 26.1명 감소하였다.
  - 이에 따라 최근 2주가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1.5명으로 **이전 2주간**(8.30.~9.12.)의 **176.5명**에 비해 **85명 감소**하였다.

##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월 30일 ~ 9월 12일		
176.5명		
130.5명		
13.1명		
44건		
19.7% (522/2655)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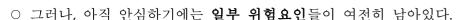








평 생 친 구



-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방문판매, 병원, 회사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1%이며,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 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한 8월 16일부터 6주간의
  환자 발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 **수도권**은 일 평균 224.3명(8.16.~8.22.)에서 **253.9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162.1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59.6명**(9.20.~9.26.)이 발생하였다.
  - 비수도권은 44.1명(8.16.~8.22.)에서 **77.1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56.3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16명** (9.20.~9.26.)이 발생하였다.

###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16. ~ 8.22.	8.23. ~ 8.29.	8.30. ~ 9.5.	9.6. ~ 9.12.	9.13. ~ 9.19.	9.20. ~ 9.26.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68.4명	331.0명	218.4명	134.6명	107.4명	75.6명
수도권	224.3명	253.9명	162.1명	98.9명	83.7명	59.6명
비수도권	44.1명	77.1명	56.3명	35.7명	23.7명	16.0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2.0명	11.6명	11.6명	14.7명	12.3명	13.4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앞으로 2주간의 연휴 동안의 방역 관리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 고향 방문이나 여행과 같은 이동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및 방역수칙 준수 등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평생친구

##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2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57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506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74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9.2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86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9월 2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시설 933개소, ▲노래 연습장 878개소 등 38개 분야 총 1만210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0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8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0개반, 555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평 생 친 구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 친구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하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격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하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평생 친구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